

2025년도 연구사업 공모 및 선정계획

◇ 2025년도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함.

I 근거 및 운영현황

□ 근거

- 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운영규정(제24조)
 -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사업 과제 발굴

□ 목적

- 서울지역 현안을 반영한 환경관련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선정하고 수행토록 하여 서울지역 환경 개선 및 보전

□ 운영현황

- 서울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조사/기술개발/산학 연구과제 수행
- 공개공모를 통해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발굴 후 선정하는 체계 운영

< 연구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정책	42(2개)	50(2개)	25(1개)	30(1개)	40(1개)
조사	22(1개)	55(2개)	105(4개)	85(3개)	60(2개)
기술개발	143(5개)	102(3개)	90(3개)	55(3개)	105(3개)
합계	207(8개)	207(7개)	220(8개)	170(6개)	205(6개)

II

추진방안 및 내용

□ 추진방안

- (정책기반 연구과제 : 제한공모) 서울시 환경정책 실현 및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핵심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성이 높은 연구과제로 서울시/환경부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과제
 - ⇒ 제한공모 : 서울시 등 환경정책 추진·검토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통해 지정과제 도출
- (기본·공동·특화 연구과제 : 자유공모) 서울지역 환경현안 개선을 위한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증화 및 환경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실효성이 있는 연구과제
 - ⇒ 자유공모 : 대학교, 연구소, 민간단체 등 환경관련 연구과제 제안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공모를 통해 자유과제 도출
- (제외과제) 법령에 의거하여 지자체 직접 용역사업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정책과제와 단순 조사를 통한 기초적 연구과제는 원천적으로 제외

□ 주요내용

- 환경정책연구 : 지역 환경개선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연구
- 조사연구 : 지역특유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연구
- 환경기술개발연구 : 지역 및 기업환경개선 등에 관한 연구
- 산학협력연구개발 : 외부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
 - ※ 산학협력연구개발의 경우 외부기관 부담금이 30%(현물포함)이상 부담

Ⅲ

연구과제 세부내용

□ 정책기반 연구과제

- 서울환경 개선을 위해 시정실현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조사/기술개발/산학협력연구
 - 정부/자치단체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분석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 지역의 빈번한 민원 해소 및 서울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 ※ 법령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해당사항 안됨.

□ 기본·공동·특화 연구과제

- 기본·공동 : 서울지역 및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공통 환경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조사/기술개발/산학협력 연구
 - 서울지역 주요 환경현안을 해결을 위해 현안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 및 조사연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공통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화 조사 및 기술개발 연구 등
- 특화과제 : 서울지역 환경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
 - 서울지역 주요 환경문제로 사회·환경적으로 수요가 요구되어 해결 방안 제시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개선·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

IV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방법

□ 공모방법

- 공모방법 : 공개공모
 - 제한공모(정책기반 연구과제) : 서울시 환경정책 관리를 하는 지자체/환경청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통해 정책반영이 가능한 과제 발굴
 - 자유공모(기본·공동·특화 연구과제) : 산학연민관 등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공모를 통해 참신한 과제 발굴
- 공고방법 : 15일 이상 홈페이지 및 지역일간 신문 등 공고
- ※ 공모내용 : 붙임 1) 참조

□ 연구과제 도출 및 선정방법

- 도출방법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 검토를 위한 서울 시정 연계 협의 및 서울현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하여 도출
- 선정방법 : 도출된 연구과제는 통합하여 단계적 절차를 통해 선정

< 공모 및 선정절차 >



※ 정책기반 연구과제는 정책현안사항 검토를 위하여 먼저 공모 실시

□ 연구과제/연구책임자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자체 심사 및 규정에 명시된 심사를 통해 연구과제 선정
 - 자체 심사 : 사전검토
 - 규정 심사 : 자문위원회(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중복성검토

< 1단계 : 사전 검토 >

- 내부심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여부 검토
- 정책활용도 검토 : 환경정책 반영가능 여부 검토
- 적정성/중복성 검토 : 사업범위 내 성과도출 및 자체 중복성 검토

< 2단계 : 연구과제 선정 >

- 자문위원회 :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

< 3단계 : 중복성 검토 >

- 환경부(연합회) : 선정된 연구과제 중복 여부 검토

※ 환경부 중복성 검토 결과 “추진불가”로 판명된 과제를 추진시차년도 센터 불이익 적용

< 4단계 : 연구책임자 공모 및 선정 >

- 공개공모 : 연구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
- 자문위원회 : 연구책임자 평가하여 선정

< 5단계 : 연구과제/연구책임자 확정 >

- 행정협의회(한강유역환경청) : 연구과제/연구책임자 최종 확정
- 연구과제/연구책임자 선정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과제 공모	사전검토(자체규정)			자문 위원회	환경부	자문 위원회	한강유역 환경청
	내부 심사	정책 활용도 검토	적정성 중복성 검토	연구 과제 선정	중복성 검토	연구 책임자 공모 및 선정	행정 협의회
2024. 5~8월	2024. 9월			2024. 10월	2024. 11월	2024. 12월	2025. 3월
준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선정기준 및 항목

- 내부심사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여부 검토
 - 심사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여부
 - 심사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
- 정책활용도 검토 : 서울시/환경부 환경정책 반영가능 여부 검토
 - 검토기관 : 서울시/환경부 관계부서
 - 검토사항 : 서울시/환경부 정책활용도 검토
- 적정성/중복성 검토
 - 적정성 : 센터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내 성과도출 가능 여부
 - 중복성 : 18개 센터 및 자체 중복성 검토
- 자문위원회 : 연구과제 선정
 - 선정기준 : 가중치 × 심사등급에 따른 100점 만점
 - 선정방법 :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 선정

심사항목	점수	가중치	심사등급
○ 지원의 필요성 - 지역센터 과제로서의 적정성/환경개선 목적과의 부합성 - 지역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연구의 시급성	25점	5	아주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아주미흡(1점)
○ 제안과제 목표의 구체성 - 관련기술의 국내·외 현황검토 결과	20점	4	
○ 제안과제 내용의 타당성 - 연구의 내용 및 범위/연구추진전략 및 방법	10점	2	
○ 제안과제의 성공 가능성 - 연구의 난이성, 연구비, 기간 등 검토	15점	3	
○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 연구성과의 유용성 및 효과성	30점	6	

- 중복성 검토 : 환경부 과제 중복 여부 검토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과제 중복 여부 검토
 - 자문위원회 : 연구과제 협상대상자(연구책임자) 선정
 - 선정기준 : 가중치 × 심사등급에 따른 100점 만점
 - 선정방법 : 60점 이상을 받은 자 중 고득점자로 선정
- ※ 고득점자가 협약대상자로 자격을 포기하거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차순위자로 선정

심사항목	평가등급	가중치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의 기여도 - 개발기술의 파급효과 - 환경민원 예방 등 시급성 - 환경보전 정책과의 부합성 		3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적정성 - 기존연구 대한 독창성 - 목표달성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5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술의 경제성 - 정책반영 및 현장적용 가능성 - 실용화 및 보급의 신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 2점 · 아주미흡 1점 	7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방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법의 적정성 - 연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사업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5	25점
합 계 (100점)			100점

- 행정협의회 :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심의의결에 따른 확정
 - 심의의결사항 : 연구과제/연구책임자 선정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 심의의결내용 :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안
 - 심의의결기관 : 한강유역환경청(행정협의회 위원장)

V

성과도출 및 참여제한

□ 연구내용에 따른 성과도출

- 설립목적에 따른 연구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토록 내실화를 기하여 연구내용에 따라 목표달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토록 함.
 - 연구사업 목적 : 지역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 기술개발사업
 - 연구사업 내용 : 정책/조사/기술개발에 따른 성과도출
 - 환경정책 : 시정실현을 통한 지역환경개선 및 민원해소 수립
 ⇨ (성과) 정책반영 및 민원해소
 - 조사연구 : 환경현안 문제와 부합되는 조사를 통한 정책기반/자료 확보
 ⇨ (성과) 환경현안 DB구축 및 논문 게재
 - 환경기술개발 : 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실용화 및 사업화 기술 개발/기업의 환경애로사항 및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 (성과) 특허출원 등록 및 사업화

< 연구사업 내용에 따른 성과도출 >



□ 성과 미도출에 따른 참여제한

○ 근거

- 녹색환경지원센터설립·운영규정(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
-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계획[서환12-454(2012.10.15.)]

○ 연구성과 활용 보고

- 연구책임자 : 연구종료 후 5년간 매년(연구책임자→센터)
- 센터 : 연구종료 후 5년간 매년(센터→행정협의회 위원장)

○ 실적 인정 성과

- (정책적 활용) 정책 수립 및 근거자료/민원대응 및 해소/추가사업 등
- (학술적 활용)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SCI/비SCI)
-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 출원/등록 및 실용신안 등록
- (사업화) 실시계약을 통한 사업화

※ 학술발표는 실적인정으로 반영되지 않음.

○ 참여제한 : 제재조치

- (연구책임자) 우리센터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학술지 논문게재/특허/정책반영/기술계약 활용실적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시 제외
- (연구과제 응모 제안기관) 우리센터 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가 종료 후 3년 이내 학술지 논문게재/특허/정책반영/기술계약 활용실적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 연구과제 선정시 연구과제 제외

VI

과제수 및 연구비/ 연구기간

□ 과제수 : 6개 내외

- 정책기반 연구과제 : 3개 내외
- 기본·공동·특화 연구과제 : 3개 내외

□ 연구비 : 2025년도 예산범위 내

- 센터부담 연구비 : 과제당 25백만원 내외
 - ※ 외부기관 지원금이 있을 경우 연구비 증액이 될 수 있음.
 - ※ 과제수/연구비는 2025년도 환경부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기간 : 2025년도 사업기간 내

- 연구기간 : 2025.4월 ~ 2025.12월

□ 외부기관(기업/대학 등) 연구비 부담기준

- 소요되는 연구과제비의 30%(현물포함) 이상이며, 과제 성격 및 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 연구비는 2025년도 예산 및 환경부 편성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수/과제당 연구비/연구기간은 도출 및 선정 절차에 따른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외부기관에서 연구비 부담액이 많을 경우 연구과제 선정시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음.

VII

행 정 사 항

- 2024. 5~8월 : 연구사업과제 공모
 - 정책기반 연구과제(제한공모) : 2024.5월~8월
 - 기본·자유·특화 연구과제(자유공모) : 2024.7월~8월
- 2024. 9월 : 내부심사/정책활용도 검토/적정성 검토
- 2024. 10월 : 연구과제 선정(자문위원회)
- 2024. 11월 : 중복성 검토
- 2024. 12월 : 연구책임자 공모 및 선정(자문위원회)
- 2025. 3월 : 연구과제/연구책임자 확정(행정협의회)
- 2025. 4월 : 연구과제별 협약체결 및 수행

- 붙임 1. 2025년도 연구사업 과제 공모안내(제한공모/자유공모) 1부
2. 제출양식 각 1부. 끝.